

**제2634호**  
**2019. 2. 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공 고

- 제2019-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교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
- 제2019-92호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학교 안과 밖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온종일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조~제2조) : ‘돌봄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안 제3조~제4조)
- 지원 사업 관련 사항(안 제5조~제6조) : 돌봄 시설 확충,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돌봄 지역 돌봄 협력 체계 구축
-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안 제7조~제9조) : 시설의 설치 운영, 시설·단체의 위탁 관련 사항,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의견 청취, 위원 수당

- 교육 및 워크숍, 지도·감독, 예산·결산, 포상 등(안 제15조~제1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4883**, FAX: **3396-8636**, 메일 : **sosoro123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지원”이라 함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예·체 프로그램, 급·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라 함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 안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자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
  2. 정서적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안전)**
-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 사업 관련 공무원, 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돌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돌봄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2019-92호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2017.11.22.)로 사업시행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기간 : 2019.02.11. ~ 2019.02.25. (14일간)

2.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3)

###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대
- 시행면적 : 5,573.10㎡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명 칭 : 더 유니스타제이차(주) 대표 박래영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4호(역삼동, 한신아트빌딩24) (☎) 2222-5000

라. 건립규모 : 지하8, 지상20층, 연면적 62,095.36㎡,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외

마.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7.11.22.

사. 사업시행변경 신청내용

- 사업시행자 변경

- 당초 : 더 유니스타제이차(주) 대표 박래영
- 변경 : 더 유니스타제삼차(주) 대표 박래영

**4. 관계도서 :** 세운 6-3-3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증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